이민 비자 발급 절차

비자란 외국인에게 자국의 입국을 허가하는 서류입니다. 만일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고자 하면, 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(USCIS)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이 안내서에서는 이민 비자 발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

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?

먼저, USCIS 에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를 신청한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. 이 후 National Visa Center 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후, 비자를 받습니다.

Step 1. 이민 초청 – 이민 초청장은 Form I-130,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라 합니다. USCIS 웹 사이트에 있는 I-130 작성 요령에 따라 서류를 작성합니다. (http://www.uscis.gov/files/form/i-130instr.pdf) 초청하려는 직계 가족의 이민 초청장이 개인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 (예 : 배우자, 자녀, 양자 등)

1) 이민 초청장을 작성한 후 다음의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. (I-130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면,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.)
   a)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예 : 여권 또는 영주권)
   b) 초청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      i) 배우자를 위한 서류
         (1) 결혼 증명서, 재혼인 경우 이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            - 한국 국적의 배우자일 경우, 두 종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            - 제적등본 : 전체 가족 구성원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여줍니다. (이 서류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대한 기록때문에 필요합니다.)
            - 가족관계증명서 : 현재의 결혼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된 서류입니다.
            - 위의 두 증명서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.
         (2) 두 사람의 진실한 결혼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    예)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차 계약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.
      ii) 자녀를 위한 서류
            - 출생증명서
            - 본인의 친자라면, 자녀의 엄마와의 결혼 증명서

iii) 배우자, 자녀를 위한 서류

(1) 미국 여권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증명사진 (최근에 촬영된 사진으로 흰색을 배경으로 해야합니다.)

(2) Form G-325A, Biographic Information

c)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공인된 영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. Camp Casey Legal Center 에 공인된 번역가의 리스트가 있습니다.

2) 이민 초청장 접수

a) 미국대사관에 있는 USCIS 사무실에 I-130 을 접수합니다.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예약한 후 방문합니다.

전화 : 02-397-4282 또는 02-397-4548 (한국내에서 전화할 때)

11-822-397-4282 또는 11-822-397-4585 (미국에서 전화할 때)

E-mail : CIS-Seoul.Inquiries@dhs.gov

b) 시카고에 있는 사무실에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I-130 작성 안내서에 있는 주소를 참고하십시오.

c) 이민초청장 접수 비용은 420 불로, 현금이나 Money Order 로 지불되어야 합니다. (피초청자 1 명당 - US420$) 접수비 이외의 다른 비용도 소요됩니다. USCIS 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민초청자는 I-130 을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의 원본 또는 사본을 여러장 준비해야 합니다. 이민초청장을 접수하는데, 대략 평균적으로 1200 불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. (예 : 접수비용, 서류 준비 비용, 번역 비용 등)

이민 초청장이 승인되기까지 2 주에서 6 개월까지 걸리며, 개인의 배경 정보나 제출된 서류의 효력에 따라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USCIS 는 이민초청장인 I-130 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, National Visa Center(NVC)로 승인된 패킷을 보냅니다. USCIS 로부터 이민초청장이 도착하면, NVC 는 초청자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비자 서류가 들어있는 Packet 3 을 보냅니다. Packet 3 을 받게되면, 이민 초청장 I-130 이 승인된 것입니다.
이민초청장이 승인된 후, 1 년 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

Step 2. 비자 수속 - 비자 서류를 DS-230, Application for Immigrant Visa 라 합니다.

1) Packet 3 에 동봉된 안내서를 읽습니다.

a) 예를 들면, 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.

b) 신청자가 21 살 미만일 경우,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있습니다.

2)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. – 신청자와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양합니다.

a) 모든 이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

i) 출생증명서

ii) 결혼증명서

iii) 여권 (복사본)

iv) 사진

v) 경찰신원조회서 (신청자가 16 살 이상일 경우, 개인의 배경 정보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)

b)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부가적인 서류

i) 법원 판결문, 수감 기록 - 범죄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

ii) 국외 추방 관련 서류 -미국에서 추방되는 적이 있는 자

iii) 이혼 증명서 - 이혼한 적이 있는 자

iv) 군대 복무 기록 - 군대에 복무 한 적이 있는 자

v) 입양 서류 – 입양한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

vi) 이민초청자 서류 – 부모나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

c) 이민 비자 심사에 필요한 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http://travel.state.gov/visa/immigrants/info/info_3190.html. 을 참고하십시오.

3) DS-230, Part I 과 II 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.

4) 또한 요청이 있으면, 이민자를 위한 Affidavit of Support 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.

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, NVC 는 신청자의 비자 서류를 심사할 것입니다. 만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,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만일 신청이 완료되면, NVC 는 신청자와 미국인 후원자와의 인터뷰 스케줄을 잡을 것입니다. 일부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. NVC 는 신청자의 결혼과 이민이 진실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.

비자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?

비자 발급 절차가 완료되고 비자가 발급되면,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비자의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. (기간 연장 -Optional Form 194- 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, 이에 대해 확신하지는 마십시오.) 이민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면,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처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(LPR)로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입국심사처의 사무관이 USCIS 로 사건을 이관하면, 2 달 이내에 Green Card(영주권)라 불리는 LPR 카드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보내집니다. 만일 “Conditional(조건부-2 년 이상 또는 2 년 이하)” 상태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, 2 년 이내에 I-751 을 추가로 제출하여 영주권을 영구적 상태로 변경해야합니다.

유용한 웹사이트

a. http://travel.state.gov/visa/visa 1750.html (U.S Department of State, Visa Information)
b. http://seoul.embassy.gov/iv general info.html (U.S. Embassy Seoul)
c. http://www.asktheconsul.org/IV category.html#CRIR (General Checklist for Immigrant Visas)
d. http://www.uscis.gov/portal/site/uscis (U.S.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ome page)
e. Helpline for military members – (877) CIS-4MIL; (877-247-2645)

Camp Casey Legal	**Camp Red Cloud Legal**	**Camp Stanley Legal**
Maude Hall Rm. 244, 730-3660	Bldg. S-267, 732-6966	Bldg. S-2333, 732-5038
이 팜플렛은 Legal assistance attorney 가 고객들에게 자주 조언하는 문제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것으로, 법률적인 조언은 아닙니다.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을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면,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. 이 팜플렛은 10 USC 1044 아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포됩니다.		